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1월 17일, 차규근의원 · 김영배의
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3.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19.)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3.) 상정, 축조심사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7.)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4.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4.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차규근의원 · 김영배의원)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이양식으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함.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음.

반면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00분의 18을 넘고,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50% 연동되어 전체의석수에 영향을 미치

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음.

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고, 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